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92
----------	-----

제안연월일 : 2008. 12. 18.

제안자 : 운영위원회

1. 제안 이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규정에 의거 2008.11.28(금) 영등포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2009년도 영등포구의회 의원의 월정수당 등을 의결하여 영등포구의회 의장에게 통보됨에 따라 의결된 월정수당 금액으로 변경하고자 함.

2. 주요골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중 제3조(월정수당) 제3항 중 별표 2의 월정수당 “3,025,000원”을 “2,325,000원”으로 변경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 예산조치 : 2009년도 예산에 반영
- 입법예고 : 생략
- 규제심사 : 해당없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월정수당) 제3항 중 별표 2의

월정수당 “3,025,000원”을 “2,325,000원”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3조(월정수당) ① ~ ③(생략)</p> <p>[별표2] 월정수당 지급 기준표(제3조 제3항 관련)</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top: 10px;">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구분</th> <th style="text-align: center;">지급액</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월정수당</td> <td style="text-align: center;">3,025,000원</td> </tr> </tbody> </table>	구분	지급액	월정수당	3,025,000원	<p>제3조(월정수당) ① ~ ③(현행과 같음)</p> <p>[별표2] 월정수당 지급 기준표(제3조 제3항 관련)</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top: 10px;">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구분</th> <th style="text-align: center;">지급액</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월정수당</td> <td style="text-align: center;">2,325,000원</td> </tr> </tbody> </table>	구분	지급액	월정수당	2,325,000원
구분	지급액								
월정수당	3,025,000원								
구분	지급액								
월정수당	2,325,000원								